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4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년 3월 29일, 이나영 의원 등 24명
상정일자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 및 심의,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4조제1항).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4월 10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3월 29일, 이나영 의원 등 24명
- 나. 회부일자 : 2018년 4월 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2018년 4월 10일 상정 및 심의,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나영 의원)

가. 제정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 6. 7. 공포·시행) 제6조가 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현행조례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운영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4조제1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남상중)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함.

※ 검토보고서 전문 [별첨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첨2]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1. 제안자 및 경위

-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 등 24명이 2018년 3월 29일 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2.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운영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2018. 3. 19. ~ 3. 26.)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3.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가. 주요 내용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 6. 7. 공포·시행)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함.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 중 일부만을 명시하고 있음.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2016년 6월 7일 공포되어 시행한 것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조례 상 건강가정센터의 위탁 가능 민간기관이 상이하게 명시되어 시군 및 도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 조례·규칙이 시군의 조례·규칙에 우선하는 상위 자치법규로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반영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관련법 개정 시 즉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무상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 중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준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26개소임. --- [붙임 1] 참조
- ※ 현재 경기도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2개소이며, 이 중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1곳만 직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31개소는 위탁운영하고 있음. --- [붙임 2] 참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8.7.17.] [법률 제15350호, 2018.1.16., 일부개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 ④ (생략)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6.7.] [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6.7., 일부개정]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 의견

-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 없음.
-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규 간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임.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함.

붙임 1

도 및 시·군의 조례 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의 범위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준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준하는 범위와 상이하게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지 방 자 치 단 체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용인시, 이천시 등 11개소	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등 15개소
건 강 가 정 지 원 센 터 의 위 탁 운 영 의 범 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